



산림사업법인 실태조사 중간결과

- 현장조사(1,412개 업체) 결과, 등록요건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 900여 개 확인
- 우선 확인된 자격대여·중복취업 위반 78개 업체·165명 → 수사의뢰·행정처분
- 미조사 업체, 보완조사 필요 업체 등 8월 말까지 지자체와 합동조사 실시
... 자격대여·부실법인 등 엄중 처분
- 향후, 모든 정부사업에서 불법·부당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근절할 방침

□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(단장 : 김영수 국무1차장)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산림기술자격 대여·유령법인 관련 언론의 문제 제기에 따라 '26년 5월부터 산림사업 추진실태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,

○ 숲가꾸기·조림 등 산림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등록된 전체 산림사업법인(1,901개 업체, 5.4. 기준) 대상으로 1차 실태조사(5.8.~22., 현장조사)를 실시하고 중간결과를 발표하였다.

* 현장조사 완료(1,412개), 폐업·부재중·소재지 변경 등으로 현장조사 미 실시(489개)

□ 실태조사 결과, 기술자격 대여·이중 취업 등 위법 사례 및 등록요건(자본금·사무실·기술인력* 등) 충족 여부가 의심되는 업체 900여 개를 확인하였으며,

* 비정상적 낮은 급여, 원거리 거주, 근로계약 부실 등 상시근로자로 채용이 의심되는 사례 다수

○ 우선 확인된 기술자격 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30개 업체 및 기술자 126명과 이중취업 금지 규정을 위반한 기술자 39명(관련업체 48개) 등 위법 사례에 대해 신속히 수사의뢰 및 기술자격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했다.

< 산림기술법 위반 유형별 사례 >

- ① (자격대여) 충북 보은 소재 산림사업법인 A의 대표 B는 법인등록요건 유지를 위해 지인인 산림기술자 C외 10명의 산림기술자 자격증 취득을 도와준 후 자격증을 대여받아 보유 기술자로 등재하고 법인을 운영함.

⇒ **수사의뢰** 산림기술법(자격대여) 위반 / **행정처분** 산림기술자격 취소

- ② (중복취업 : 법인 중복) 산림경영기술자(중급)인 D는 경북 의성 소재 산림법인 '가' 소속 기술인력('23.8.~'26.4.)으로 일하면서, 경남 하동 소재 산림법인 '나'('24.9.1.), 경남 고성 소재 산림법인 '다'('25.8.19.), 경북 구미 소재 산림법인 '라'('25.11.17.)의 상시 기술인력으로 등재하는 등 기존 업체 외 다수 타 업체에 중복취업함.

⇒ **수사의뢰** 산림기술법(중복취업) 위반 / **행정처분** 산림기술자격 정지

- ③ (중복취업 : 他사업 참여) 산림경영기술자(초급)인 E는 경남 김해 소재 산림법인 '마'(본인 대표)에 상시 기술인력('25.3.1.)으로 등재한 상태에서 경북 의성 소재 산림법인 '바'(본인 대표)가 수주한 '○○지구 조림사업'('26.4.9~5.3.)에 '바' 소속 기술인으로 현장대리인 업무를 수행하여 중복취업함.

⇒ **수사의뢰** 산림기술법(중복취업) 위반 / **행정처분** 산림기술자격 정지

- 정부는 5월 실태조사 시 조사하지 못한 업체와 보완조사가 필요한 업체에 대해 관할 지자체(시·도)와 합동*조사반을 구성(6.15.)하여 추가 실태조사를 실시(~8월말, 잠정)하고 있으며,

* 산림사업법인(관할 시·도)과 기술자격(산림청) 행정처분권자 합동조사로 진행

-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고용보험 정보 등을 활용하여 자격대여, 유령법인(등록요건 미달) 운영 등을 철저히 조사하여 위법 행위를 한 산림법인 및 기술자에 대해 법인등록·기술자격 취소 등 엄중한 처분을 통해 산림사업의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고 시장질서를 확립하도록 할 계획이다.
- 아울러, 실태조사 및 행정처분을 회피할 목적으로 법인등록을 취소하고 신규로 법인을 등록하는 의심사례도 나타나고 있어, 관할 지자체가 산림사업법인 등록 시 상시근로자로 등재하는 기술자의 4대 보험, 근로계약서, 중복등록 등을 면밀히 확인하여 부실 법인의 등록을 차단할 계획이다.

- 향후, 정부는 산림사업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정부사업을 대상으로 부당하고 불법적으로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이나 행위를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.

참고: 산림사업법인 현황 및 관련 법령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	책임자	과 장	위은환	(044-995-202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우	(044-995-2024)
담당 부서	산림청 산림복지국 산림안전보건일자리팀	책임자	팀 장	방재일	(042-481-1850)
		담당자	사무관	노지열	(042-481-4187)



□ 산림사업법인 등록 현황 및 등록 기준 ('26.6월 기준)

업종	등록 현황	등록 기준		
계	3,113개 업종 (1,848개 업체)	기술 수준 (상시근로)	자본금	시설
- 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	54	기술자 3인	1억원	사무실
- 숲가꾸기 및 병해충 방제	1,389	기술자 3인, 기능사 4인	1억원	
- 산림토목	424	기술자 5인	3억원	
- 자연휴양림 등 조성	61	기술자 4인	3억원	
- 도시숲 등의 조성·관리	1,014	기술자 2인	1억원	
- 숲길 조성·관리	171	기술자 3인	3억원	

* (등록 추이) ('19) 1,841 → ('22) 2,468 → ('25) 3,108 → ('26.6) 3,113

※ 1개 업체가 다수의 업종을 등록한 경우는 복수의 업종으로 간주

□ 위법행위 관련 법령

법령·규정	주요 내용
산림자원법 (제25조, 제26조)	<산림사업법인의 등록취소 등> 처분청 : 시도지사 ◆ 산림사업법인의 해당 행위에 대한 시정 명령 * ①정당한 사유없이 산림사업을 시작하지 않는 경우, ②산림사업의 부실시공이 우려되는 경우, ③법인의 중요사항 변경등록 10일 이내 미신청 ④자료 미제출 및 조사검사 거부 ◆ 6개월 이내의 영업정지 및 과징금(5천만원 이하) 부과 * ①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(3개월 영업정지 또는 2,250만원 과징금) ②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(6개월 영업정지 또는 4,500만원 과징금) ◆ 산림사업법인 등록취소 및 고시(④의 경우 ①~③사유로 처분절차 진행시 등록취소 금지) *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②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빌려준 경우 ③영업정지기간에 사업을 하거나 3회 이상 영업정지명령을 받은 경우 ④폐업한 경우 ◆ 재등록 제한 (①~③사유로 등록을 취소한 경우)
산림기술법 (제11조, 제31조, 제12조)	<산림기술자의 명의 대여 금지>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◆ 산림기술자 자격을 대여하거나, 대여받거나, 알선하는 행위 금지 ◆ 산림기술자 자격이 필요한 두 개 이상의 업체에 중복 취업 금지 등 <산림기술자의 자격취소 등> 처분청 : 산림청 ◆ 자격취소 :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 취득, 자격정지기간에 업무 수행, 자격증 대여, 이중취업(2차 위반), 고의로 업무를 다르게 수행 ◆ 자격정지 : 이중취업(1차 위반, 36개월), 법정 의무교육 미이수(1차 위반, 3개월 등), 과실로 업무를 다르게 수행(1차 위반, 6개월 등) ◆ 자격취소된 경우 3년 이내 동일한 자격 취득 금지